

1. 머니투데이 가치체계도

1-1. 비전

화해, 조정, 해법의 경제미디어

1-2. 미션

- ① 시장경제의 가치를 지킨다
 - 시장경제가 지닌 개방성, 합리성, 투명성을 사회의 각 영역에서 추구한다.
 - 시장경제 혁신 동력인 '기업가정신'을 안팎으로 독려한다.
 - 경제미디어로서 나라 경제에 크고 작게 공헌하는 기업을 격려한다.
 -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추구하며, 선부른 평등주의로 기울지 않는다.
- ② 이성적 휴머니즘의 가치를 지킨다
 -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온기가 느껴지는 '훈훈한 사회' 만들기에 역할을 한다.
 - 테러와 시위에서의 폭력에 반대한다.
 - 사회 곳곳의 권력남용과 부패에 대해 무관용으로 추적하여 노출한다.
- ③ 개인과 사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콘텐츠 전문기업이 된다.
- ④ 고객 지향적으로 콘텐츠를 공급한다.
- ⑤ 우리의 비전을 구현할 스타 저널리스트를 육성한다.

1-3. 핵심 가치

치밀한 탐색

치열한 학습

열띤 토의

경계 없는
협업

부끄럽지
않은 품질

혁신 선도

2. 핵심가치를 지키기 위한 머니투데이 구성원의 태도 : 행동원칙



① 마음껏 날고 뛰자. 다만 항상 겸손하게.

- 출입처나 취재원에 대해 이른바 '갑질'하지 말고 자세를 낮춰라.
- 하루하루 면피성 기사를 쓰는 것으로 일을 다 했다고 생각지 말고, 철저하게 취재하고 치열하게 기사를 써야 한다.

② 단순한 전달자가 되지 말자.

- 확인되지 않은, 근거 없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 쓰는 것은 기자 본연의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고 머니투데이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.
-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은 "이것은 주장이다"라는 표현을 기사에 넣어야 한다.

③ '펜의 힘'과 '회사 브랜드'를 이용해 사익을 취하지 말자.

- 머니투데이 기자나 데스크, 임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하지 않는다.

④ 펜 끝의 날카로움은 남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자.

- 언론은 양날의 검을 쓰는 무사와 같다.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생채기를 내는 근원적 가해의 죄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마음에 새기자.
- 고의적이거나 설부른 기사는 바로 파괴적 언론 폭력으로 귀결된다.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처신하자.

2. 핵심가치를 지키기 위한 머니투데이 구성원의 태도 : 행동원칙



⑤ 특정 정당이나 단체, 노선의 입장만을 담은 편향된 기사를 쓰지 않고

반대 단체의 입장도 균형감있게 다뤄야 한다.

- 자신이 특정 정당이나 단체의 노선을 지지한다고 해서 그것을 기사에 반영해선 안 된다.

⑥ 취재원의 반론권을 어떤 경우에도 빠뜨리지 말고 보장하자.

- 보도기사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포함할 때는 상대방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.
- 기자 개인이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아 소송에 들어간다면 회사가 보호해줄 수 없고, 본인 책임이다.
- 정당하게 반론권을 보장했음에도 무책임한 소송을 당한다면 회사는 이에 맞서 기사를 끝까지 보호한다.
- 한두 명만 인터뷰한 결과를 침소봉대하여 마치 다수가 그런 말을 한 것처럼 과장하거나 가상의 인용문을 만드는 행위는 부끄러운 것이다. 익명처리 할 때도 지어내서는 안 된다.

⑦ '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'의 내용을 준수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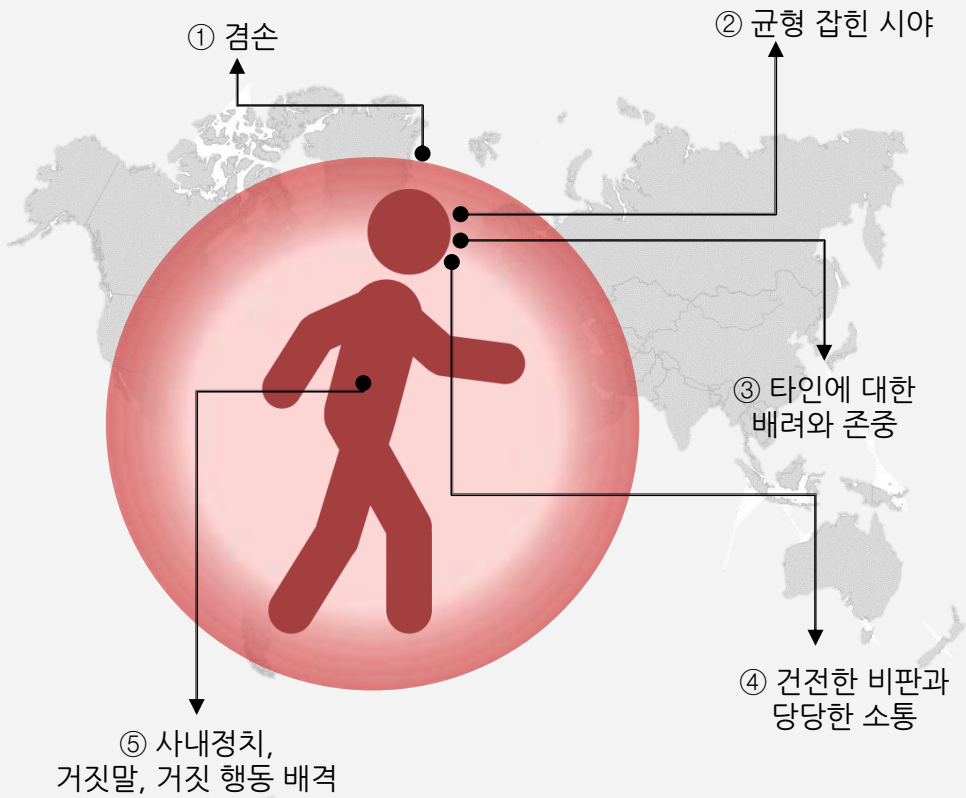
- 어떠한 부정청탁도 받지 않으며 타인을 위해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.
-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어떠한 금품 등도 받지 않는다.
-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한다.

2. 핵심가치를 지키기 위한 머니투데이 구성원의 태도 : 행동원칙



- ⑧ SNS 등에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나 해사 행위에 해당하는 글을 지어서 올리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.
- ⑨ 구성원은 회사의 사규와 정보보호 서약을 따른다. 연봉의 비공개 원칙 등 회사가 규정한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한다.
- ⑩ 머니투데이 구성원은 지연, 학연, 혈연 등을 토대로 파벌을 조성하는 등 화합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⑪ 기수와 서열을 넘어 능력 위주로 직급과 직책이 운영될 수 있는 조직을 만든다.

3. 머니투데이의 문화



- ① 겸손
- ② 균형 잡힌 시야
- ③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
- ④ 건전한 비판과 당당한 소통
- ⑤ 사내정치, 거짓말, 거짓 행동 배격

4. 머니투데이 주요 직급별 역할과 책임

— 4-1. 발행인

- ① 회사의 비전, 미션, 핵심가치를 수호한다.
- ② 회사의 연간 경영계획과 중기전략을 수립하여 구성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한다.
- ③ 콘텐츠 혁신과 미디어플랫폼이 어떻게 변하는지 가장 앞서서 깊이 파악해야 한다.
- ④ 발행인은 회사 안팎으로 가벼운 처신이나 감정적 언사로 회사의 브랜드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.
- ⑤ 발행인은 수시로 구성원들에게 비전 등 회사의 가치를 설명해야 한다.
- ⑥ 구성원들의 삶의 질(처우개선, 복리증진 등)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.
- ⑦ 회사 이익에 보탬이 된다는 이유로 외부인들의 민원을 구성원에게 무리하게 해결하도록 지시하지 않는다.
- ⑧ 사적인 목적의 외부 민원 해결을 위해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는다.
- ⑨ 발행인은 회사 활동의 최종 책임자다. 책임을 위(이사회)나 아래(후배 구성원들)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.
- ⑩ 발행인은 회사를 대표하는 최고 수준의 대외관계 관리책임자이자 직접 수행자다.
- ⑪ 필요한 자리를 피하지 않는 것은 물론, 적극적으로 관계를 발굴해야 한다.

4. 머니투데이 주요 직급별 역할과 책임

— 4-2. 임원

- ① 회사의 비전, 미션, 핵심가치를 수호한다.
- ② 발행인과 연대책임을 진다.
- ③ 발행인을 도와 구성원들의 삶의 질(처우개선, 복리증진 등)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.
- ④ 회사 이익에 보탬이 된다는 이유로 외부인들의 민원을 구성원에게 무리하게 해결하도록 지시하지 않는다.
- ⑤ 사적인 목적의 외부 민원 해결을 위해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는다.
- ⑥ 회사의 콘텐츠를 개선하고 미래지향적인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기획하고 실행을 주도한다.

4. 머니투데이 주요 직급별 역할과 책임

— 4-3. 편집국장

- ① 깊은 안목과 통찰력을 갖춘 언론인을 육성한다.
- ② 회사의 비전, 미션, 핵심가치의 수호자가 되어 한다.
- ③ 콘텐츠 혁신을 진두 지휘하고,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민한다.
- ④ 편집국을 열린 토론의 장으로 유도해야 한다.
- ⑤ 사회 현안이나 이슈에 대해 부서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가 효과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편집국장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.
- ⑥ 회사 이익에 보탬이 된다는 이유로 외부인들의 민원을 구성원에게 무리하게 해결하도록 지시하지 않는다.
- ⑦ 사적인 목적의 외부 민원 해결을 위해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는다.
- ⑧ 편집국 구성원의 신상필벌에 대해 준엄한 최종 판관이 되어 하며, 제기된 문제는 신속하게 결론을 내고 투명하게 소통해야 한다.
- ⑨ 국장은 발행인에 이어 회사의 차상위 대외관계관리 책임자이자 수행자다.
- ⑩ 편집국 구성원 간에 인간적인 따뜻한 관계가 만들어지도록 이끈다.

4. 머니투데이 주요 직급별 역할과 책임

— 4-4. 편집국 데스크

- ① 데스크는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의 모범사례이자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.
- ② 콘텐츠 혁신에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적인 변화를 시도한다.
- ③ 현실적으로 부서원들의 기사를 모두 에디팅할 수 없다고 해도 그 기사의 최종 책임을 진다. 다만 데스크가 최선의 의무를 다했을 때는 면책한다.
- ④ 데스크는 스스로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모범사례가 되도록 애쓴다. 데스크가 개인생활 희생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부서원들의 균형도 지키기 위해 노력할 때, 회사는 이를 높이 평가하고 배려한다.
- ⑤ 데스크는 자기 영역에서 해당 부서원들을 가르칠 수 있는 멘토가 돼야 한다.
- ⑥ 데스크는 부서간 벽을 깨는 역할을 해야 한다.
- ⑦ 기자들의 애로를 귀담아 듣고 핵심가치에 맞게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.
- ⑧ 대외활동에서 회사를 대표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품위를 지키도록 한다.
- ⑨ 회사 이익에 보탬이 된다는 이유로 외부인들의 민원을 구성원에게 무리하게 해결하도록 지시하지 않는다.
- ⑩ 사적인 목적의 외부 민원 해결을 위해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는다.
- ⑪ 미디어의 영향력을 사유화 하지 않도록 한다.
- ⑫ 데스크는 회사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을 경우, 경영진과 편집국장에게 공식 채널을 통해 당당히 전달하고, 나아가 직접 해결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.
- ⑬ 데스크는 부서원들의 신상 필벌에 대한 사안을 국장 및 인사위원회에 신속히 보고한다.
- ⑭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 보안을 지킨다.

4. 머니투데이 주요 직급별 역할과 책임

— 4-5. 편집국 차장/팀장

- ① 후배들보다 먼저 기획하고 직접 기사를 쓴다.
- ② 차장(팀장)은 팀원들의 취재활동과 기사작성을 지원하고 피드백을 줘야 한다.
- ③ 후배 기사에 '프리라이더' '기사 가로채기'로 편승해서는 안 된다.
- ④ 데스크와 후배들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한다.
- ⑤ 데스크와 함께 혁신적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시도를 끊임 없이 한다.
- ⑥ 부서간, 팀간 벽을 깨기 위한 활발한 소통에 앞장 선다.
- ⑦ 대외활동에서 회사를 대표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품위를 지키도록 한다.
- ⑧ 사적인 목적의 외부 민원 해결을 위해 부당한 지시를 후배들에게 내리지 않는다.
- ⑨ 미디어의 영향력을 사유화하지 않는다.
- ⑩ 회사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식 채널을 통해 당당히 제기한다.
- ⑪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 보안을 지킨다.

4. 머니투데이 주요 직급별 역할과 책임

— 4-6. 기자

- ① 기자는 회사를 대표하는 얼굴이다. 가벼운 행동이나 부적절한 처사로 회사의 품위를 훼손하지 않는다.
- ② 미디어의 브랜드와 펜의 힘을 사유화하지 않는다.
- ③ 겸손하게 뛰고, 또 뛰어라.
- ④ 거짓말, 허위보고 등은 있을 수 없다.
- ⑤ 데스크와 팀장들의 취재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고 데스크의 편집권한을 존중한다. 현장에서 판단했을 때 기사가 되지 않는다면 구체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.
- ⑥ 무단결근, 이탈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이지 않는다.
- ⑦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와 상반되거나 지나치게 한 쪽으로 치우친 시각을 담은 기사를 쓰지 않는다.
- ⑧ 철저히 사실을 확인한다.
- ⑨ 완벽한 품질의 기사를 생산해 내보낸다.
- ⑩ 구성원 간의 인사 등 기본적인 예절과 예의를 지킨다.
- ⑪ 회사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식 채널을 통해 당당히 제기한다.
- ⑫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 보안을 지킨다.

※ 별첨 -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머니투데이 구성원 행동규칙

— 구성원 일반

- 법에서 규정한 '공직자 등'에 언론사 대표와 임직원이 포함된 만큼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.
-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부정청탁의 행위 유형 14가지를 숙지한다.
- 부정청탁을 받은 머니투데이 구성원은 즉시 회사(부서장 등)에 신고한다.
- 금품에 속하는 범위를 숙지하고 받지 않는다. 만약 출입처 등에서 금품 제공 등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회사(부서장 등)에게 신고한다.
- 식사(3만원), 선물(5만원), 경조사비(10만원) 규정을 준수한다. 동일인으로 취급되는 한 회사, 집단으로부터 1년에 식사, 선물, 경조사비 등을 얼마나 받았는지 스스로 파악해야 한다.
- 동호회 등 친목단체 활동을 할 경우 단체 내 내규를 만들도록 한다.

※ 별첨 -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머니투데이 구성원 행동규칙

— 취재기자

기업체 관계자 등 대응 때

- 기자는 취재 현장에 나가 취재원으로부터 금품(현금·상품권 등)을 받지 않는다.
- 기자는 취재원이 청탁이나 금품 등을 제공하려 할 때 현장에서 거부의사를 분명히 한다.
- 출입처 취재원이 제공하는 식사비는 3만원 이하로 한다.
- 여러 명의 취재원과 식사를 했다면 1/n로 나눠 지불한다.

대외행사 참가 때

- 기자는 취재 목적이더라도 공연기획사 등으로부터 5만원이 넘는 일체의 티켓 등을 받지 않는다.
- 골프는 정가의 비용(할인받지 않은 금액)을 내고 친다.
- 체육대회 등 회사 행사에 기업체의 경품 협찬을 요구하지 않는다.
- 법에 열거된 14가지 부정청탁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외부 강의·기고 관련

- 기자가 외부강의를 할 땐 반드시 회사에 사전신고 한다.
- 사례금 수령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등은 신고해야 한다. 다만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 등은 신고대상이 아니다.
- 기자가 외부 기고를 요청받은 경우 기고 1건당 1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한다.